W-4.2.4 신체억제대 사용 규정

● 신체억제대 사용기준

- ☞ 체벌의 방법 또는 의료진/병동의 편의를 위해서 시행되어서는 아된다.
- 1) 지남력이 없고 의식이 혼미한 상태로 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
- 2) 치료에 필요한 각종 line 및 튜브를 자발적으로 제거하려 하거나 제거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
- 3) 질병으로 인해 정신이 심하게 불안정(심한 불안, 초조, 약물 부작용 등)하거나 혼돈된 상태에 처하여 본인 또는 타인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
- 4) 기타 의료진이 억제대를 사용하는 것이 환자에게 더 유익하다고 판단 이 되어 담당의 승인을 얻은 경우

● 신처억제대 종류 및 사용 방법

손목 억제대, 발목 억제대, 흉부 억제

● 신체억제대 사용 절차

의사의 처방-> 환자 또는 보소자 설명 및 동의->신체억제대 사용환자 관찰 및 평가->부작용 발생시 중재

● 신체억제대 관련 직원교육

억제대 사용과 관련된 직원은 년 1회 신체억제대 사용과 관련된 교육